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호 2290 제출연월일: 2024. 7. 26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폐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업면허, 어업허가, 양식업 면허 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부과·징수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을 위반하여 초과한 어획량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배분량에서 공제한다. 제44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배분량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다음 연도 배분량 공제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(제39조제 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- 1. 이 법 시행 전에 조성금을 징수한 경우
- 2.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4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 게 된 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부칙 제3조에 따라 조성금을 징수한 경우

- 제3조(조성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에 대한 조성금의 부과·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 른다.
- 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2조제2항 중 "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44조제2항제5호, 같은 조 제4항 후단, 같은 조 제5항 및 제49조제7항제5호"를 "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49조제7항제5호"로 한다.

②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5호를 삭제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 개 정 안

제38조(배분량의 관리) ① (생략)

② 제1항을 위반하여 초과한 어 획량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 도의 배분량에서 공제한다. 다 만,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 원조성을 위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 ~ ⑤ (생 략)

제44조(조성금) ① 행정관청은 수 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(이하 "조성금"이라 한다)을 부과・징수할 수 있다.

- 1. 「수산업법」 제7조에 따른

 어업면허 또는 「양식산업발

 전법」 제10조에 따른 양식업

 면허를 받은 자
- 2. 「수산업법」 제14조에 따른

 어업면허 또는 「양식산업발

 전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

제38조(배분량의 관리) ① (현행 과 같음)

② 제1항을 위반하여 초과한 어 획량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 도의 배분량에서 공제한다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- <u>양식업 면허의 연장허가를 받</u> <u>은 자</u>
- 3. 「수산업법」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 또는 「양식산업발 전법」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「수산 종자산업육성법」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
- 4. 「수산업법」 제43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
- 5. 「수산업법」 제48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
- 6.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원

 상회복조치의 명령대상에서

 제외된 자
- 7. 제38조제2항에 따른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
- 8. 제39조제3항에 따른 부수어 획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
- 9.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관계 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받아 행하는 공유수면의 준설,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의 조성,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

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 광 행위 허가를 받은 자

- 10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(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8조를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성금을 면제한다.
- 1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13
 조・제15조 또는 제104조에
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・
 어촌계 또는 업종별수산업협
 동조합으로서 「수산업법」
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, 「양
 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에 따
 른 양식업 면허 또는 「수산
 종자산업육성법」 제21조에
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
 받은 자
- 2.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
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으로서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
- 3. 「수산업법」 제48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 중 소량의 수산자원을 포획・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신고한 자
- 4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・이용・보급 촉진법」 제2조에 따른 신・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신・재생에너 지발전을 위하여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점용・사용허가를 받거나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8 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
-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로 일정한 면적 또는 일정한 어선톤수 미만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

- ③ 행정관청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조성금의 부과·징수의 대상이 된 자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경비를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부과할 조성금에서 이를 공제한다.
- ④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에 따른 면적 또는 어선톤수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,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초과량 및 부수어획량을 고려하여 정한다. 이 경우 조성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제1항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는 조성금의 산정기준·감액기준·부과절차 및 부과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⑥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조성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해당 조성금을 국세 체납처

 분의 예 또는 「지방행정제재・

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

⑦ 조성금은 수산자원조성사업 의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제44조(조성금)	수산자원조성금 부과 규정 삭제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	
1	제44조(조성금)	제1호: 예상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	

2. 상세 사유

O '23년 수산자원조성금의 징수실적 737백만원, '24년 징수계획 780백만원으로 예상 비용이 10억 미만에 해당(수산자원조성금 부과기준에 따른 지자체 계획)

Ⅲ. 부대의견

O 해당 없음

Ⅳ. 작성자

O 성명

주무관	사무관(서기관)	과장	실장•국장
최강	_	임태호	최현호

O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강	044-200-5532	theaqualist@korea.kr